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-124

제출년월일 : 2019. 3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

○ 아동의 건강한 성장·발달을 도모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다함께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(안 제4~제6조)

○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
○ 돌봄시설 간 협력과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 ~13조)

□ 제정조례안 : 붙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붙임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(비용추계서)

□ 사전예고(결과) : 붙임

○ 입법예고 : 2019. 01. 25. ~ 02. 15. (21일간)

○ 예고결과 : 부서 자체의견 2건 (반영 2건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보고 결재문

○ 조례제정 방침 결재문

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돌봄 아동" 이란 안산시(이하 "시" 라 한다)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.
2. "다함께 돌봄 사업" 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.
3. "다함께 돌봄 서비스" 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,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"다함께돌봄센터" 란 초등학생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설치하는 돌봄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함께 돌봄 사업)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
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3.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
4. 돌봄 민·관 협력, 지역연계 사업
5.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다함께 돌봄 서비스)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·문화 활동 지원
4.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

제6조(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1. 돌봄 아동의 연령
2. 맞벌이 가정
3. 다자녀 가정
4. 돌봄 필요시간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) ①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 및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비용의 징수)①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2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4.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돌봄협의체 설치)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·자문
2.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
3.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
4.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지역돌봄협의체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시 교육지원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, 돌봄 관계자, 전문가, 학부모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협의체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·관 협력과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돌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해촉(解囑)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,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) 시장은 초등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도 · 감독)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· 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여성가족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과장 김 제 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아동친화팀장 김 혜 정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오 영 숙 (행정 2269)

안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124

제안년월일 : 2019. 4. 2.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○ 제명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수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제명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수정 (제명)

○ 함께 지원하는 의미의 명칭으로 일괄 수정함. (안 제7조제1항, 제2항, 제8조제1항, 제15조)

○ 함께 지원하는 시설의 명칭으로 수정 (안 제8조제1항)

○ 명칭을 일괄하여 삽입함 .(안 제10조제5항)

○ 초등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함. (안 제14조)

안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" 안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" 를 "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" 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, 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" 돌봄 시설" 을 각각 "다함께돌봄센터 "로 하며,

안 제10조제5항 중 "돌봄업무담당 팀장" 을 "다함께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" 으로 한다

안 제14조 "초등 다함께" 를 "다함께" 로 하고, 안 제15조 중 "돌봄 시설의" 를 "다함께돌봄센터" 로 한다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명 안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	제명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제7조(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) ①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	제7조(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) ①---------- 다함께돌봄센터----------.
②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	② ------ 다함께돌봄센터-----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원안과 같음)
제8조(비용의 징수)①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	제8조(비용의 징수)① 다함께돌봄센터----------.
②· ③ (생략)	②· ③ (원안과 같음)
제10조(지역돌봄협의체 구성)① ~ ④ (생략)	제10조(지역돌봄협의체 구성)① ~ ④(원안과 같음)
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돌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	⑤ ---------- 다함께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----------
제14조(포상) 시장은 초등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	제14조(포상) ------ 다함께 ----------
제15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	제15조(지도·감독) ---------- 다함께돌봄센터 ----------